

구미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6. 4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회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의 일부개정(2005. 8. 5)으로 시군자치구의회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70,000원에서 100,000원으로 개정됨에 따라
 - 「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」에서 회기수당 지급기준이 70,000원에서 100,000원으로 개정(2005. 9. 6) 되었음.
 - 이에 따라 구미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을 지방의회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구미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지급 기준을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 지급기준 100,000원으로 조정<[별표]>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
- 「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」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[별표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구 분	액 수
일 비	100,000원
여 비	국내여비규정 "별표2"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
제명 : <u>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</u> [별표]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액수</th></tr><tr><td>일비</td><td>70,000원</td></tr><tr><td>여비</td><td>국내여비규정 "별표2"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</td></tr></table>	구분	액수	일비	70,000원	여비	국내여비규정 "별표2"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	제명 : <u>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[별표]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액수</th></tr><tr><td>일비</td><td>100,000원</td></tr><tr><td>여비</td><td>국내여비규정 "별표2"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</td></tr></table>	구분	액수	일비	100,000원	여비	국내여비규정 "별표2"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
구분	액수												
일비	70,000원												
여비	국내여비규정 "별표2"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												
구분	액수												
일비	100,000원												
여비	국내여비규정 "별표2" 여비지급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												